



약국개설 등록

민원사무명	약국개설신청 등록
사무내용	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
수수료	10,000원
처리기한	3일
구비서류	※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☞ 민원인 제출서류 1. 신청서 1부. 2. 한약사의 경우(한약사 면허증 사본) 1부 3. 약사의 경우(약사 면허증 사본)1부. ☞ 결격사유 확인 1. 약사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의 취소사실 2.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
처리절차	접수 → 시설조사 → 검토 → 결재 → 결과 통보(등록증발급)
협의기관 및 협의사항	협의사항 없음
관련법·제도	1. 약사법 제20조2항 2. 동법시행규칙 제7조
담당부서	보건소 예방의약팀(470-6534)
서식	파일다운받기 